

「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2003. 8. 14.) → 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

바뀜 9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93/compare?from=228&to=23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05:2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<u>삼육학원</u> 정관 및 <u>삼육대학교 인사관리</u>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교원 <u>재임용</u> 과 <u>승진</u>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 <u>교원</u> 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<u>승진</u> 및 <u>재임용</u>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대상) 본 규정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 기간 만료자와 <u>승진</u> 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은 <u>우리 대학교</u> 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 <u>직위별</u> <u>임용기간</u> <u>승진 소요기간</u> <u>전임강사</u> <u>2 년</u> <u>2(3) 년</u> <u>조 교 수</u> <u>4 년</u> <u>5 년</u> <u>부 교 수</u> <u>6 년</u> <u>6 년</u> <u>교 수</u> <u>정년보장</u>
제3조(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)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<u>재임용</u> 기간을 1년으로 한다. <u>직 위 별</u> <u>임용기간</u> <u>승진소요기간</u> <u>전임강사</u> <u>2년</u> <u>2(3)</u> <u>조 교 수</u> <u>4년</u> <u>5</u> <u>부 교 수</u> <u>6년</u> <u>6</u> <u>교 수</u>	제3조(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)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심사)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, 연구, 봉사, 직무 영역을 <u>별지서식 1에 의해서</u> 교수 업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다.	제4조(통지 및 심사) ①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<u>통지(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한다.</u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③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, 연구, 봉사, 직무영역을 <u>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</u>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다. [2005.02.24. 개정]
제5조(교수업적평가위원회) 교수의 재임용과 승진 임용 심사를 위해서 인사위원장은 교수 업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	제5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)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 <u>교원인사위원장은</u> 교원 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
제6조(평가)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, 제3조에 의거, <u>연 2회(2월, 8월)</u>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.	제6조(평가) ①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, 제3조에 의거 <u>년 2회(2월, 8월)</u>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. 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③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.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. [2005.02.24. 개정]
제7조(재심) 재임용과 승진 임용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재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	제7조(재심)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<u>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</u>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「특별법」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[2005.02.24. 개정]
제8조(재심위원회)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수재임용 및 승진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	제8조(재심위원회) 재심위원회는 <u>교원인사위원장을</u>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<u>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</u> 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재심 결과) 1.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<u>재임용 및</u>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 2. 제1항의 결정 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.	제9조(재심결과) ①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<u>교원인사위원회</u> 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 ②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

직위별

임용기간

승진 소요기간

전임강사

2 년

2(3) 년

조 교 수

4 년

5 년

부 교 수

6 년

6 년

교 수

정년보장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) 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통지 및 심사) ①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, 연구, 봉사, 직무영역을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다. [2005.02.24. 개정]

제5조의 제목 "교수업적평가위원회"를 "교원업적평가위원회"로 한다.

제5조 중 "교수의 재임용과 승진 임용 심사를"을 "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심사를"로 하고, "인사위원장은 교수업적평가심

사위원회를"을 "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"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평가) ①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, 제3조에 의거 년 2회(2월, 8월)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.

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.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. [2005.02.24. 개정]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재심) 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「특별법」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[2005.02.24. 개정]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재심위원회) 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가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재심결과) ①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

②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